KIRI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일본의 금융서비스중개업 시행과 전망

정인영 연구원

요 약

일본은 2021년 11월부터 단일 사업면허 취득을 통해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를 시행함. 본제도 시행으로 소비자의 편의 향상이 기대되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업자 간 제휴가 촉진되고 제조와 판매기능의 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급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되며, 보증금 공탁 의무가 부과됨. 아울러 중개업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 의무, 고객정보보호 의무, 고객자산예탁 금지 등 영업행위규제가 적용됨

○ 일본에서는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편의 향상 및 보호를 위해 수년간의 금융규제 정비 과정을 거쳐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창설하고, 2021년 11월부터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를 시행함[1)]

- 금융서비스중개업[2)]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업권별로 나뉘어있는 중개업 등록을 단일 사업면허 취득을 통해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존 법제하에서는 업권별 중개업 허가 또는 등록, 중개업자의 소속제[3)]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복수 업종 및 다수 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원활히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4)]
- 2017년 11월 금융심의회 스터디그룹 설치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해당 법에 따라 2021년 11월 금융서비스중개업제도가 시행됨
  - 금융청은 플랫폼 및 핀테크기업을 비롯한 타 업종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동일기능·동일리스크를 보유한 업무에는 횡단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마련한다는 원칙하에 2017년 11월 금융심의회 스터디그룹을 설치함
- 단, 기존 중개업자가 금융서비스중개업에 중복 등록 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업권에서의 겸업은 금지함[5)]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경우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이 요구되지 않는 한편, 금융기관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보호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급상품 제한, 보증금 공탁 등 소비자보호조치가 시행됨

---

1) 金融庁(2021. 6. 10), "「金融サービス仲介業」創設の背景および概要について"; 金融審議会(2019. 12. 20), "「決済法制及び金融サービス仲介法制に関するワーキング・グループ」報告の公表について"
2) 금융서비스중개업(金融サービス仲介業)은 「예금 등 매개업무」, 「보험 매개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 「대금업 대출 매개업무」의 어느 하나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 제11조 1항)
3) 은행대리업자, 금융상품 중개업자, 보험모집인 등은 제도상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소속제하에서는 소속처 금융기관은 ① 중개업자의 지도 등의 의무나 ②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짐
4) 2019년 말 기준, 은행, 보험, 금융상품중개업의 허가나 등록을 모두 취득한 회사는 5개 사에 불과함(金融庁(2020. 3), "金融サービスの利用者の利便の向上及び保護を図るための – 説明資料")
5)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서비스업 매개업무가 중복 등록된 경우 기존의 등록은 소멸됨(법 16조 4항, 6항)

○ 우선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고도의 전문적 설명을 필요로 하는 상품·서비스의 취급이 제한됨[6)]

- 보험서비스 중 변액보험, 외화보험, 화재보험[7)], 재보험, 단체보험, '기초율 변경권[8)]'에 관한 조항을 보통보험 약관에 기재하는 제3보험[9)], 종신보험 등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함
  - 또한 보험금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생명보험, 보험금액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손해보험, 보험금액이 600만 엔을 초과하는 제3보험은 제공할 수 없음
- 유가증권의 중개업무 중에는 신용거래, 파생상품거래, 공매도 취급이 불가능하며, 외화예금 및 구조화 예금 등 특정 예금계약 등도 취급할 수 없음

〈표 1〉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금융상품 제공 범위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예금	대출		생명보험	손해보험
취급 가능	보통예금, 정기예금	모기지	공사채, 상장주식, 투자신탁 등	정기보험, 개인연금,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상해보험, 여행보험 골프보험, 펫보험
취급 불가	투자성 예금 (구조화/외화 예금)	카드대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신용거래	변액보험, 외화보험, 종신보험 기초율 변경권이 포함된 제3보험, 고액계약 등	

자료: 金融庁(2020) 등

○ 또한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보증금 공탁의무 또는 배상책임보험계약 가입, 업권별로 지정된 분쟁해결기관과의 업무계약 체결[10)] 의무가 부과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특정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금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들의 손해에 대해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법 6조)
  - 종전에는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한 금융기관이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위탁금융기관이 일차적 배상책임을 지고 있었음[11)]
- 따라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자력 확보를 위해 보증금 공탁의무가 부과됨(법 22조)
  -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초 사업 연도 종료일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1,000만 엔을, 이후에는 전 사업 연도에 금융서비스중개업으로 수취한 수수료 등의 5%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함(시행령 26조)
  - 다만, 정부가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 보증금 공탁의무를 면제함[12)]

6)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金融サービスの提供に関する法律施行令)」 제17조~제20조
7) 부동산 및 동산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동산을 보험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8)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험사고발생률(이하, '예정발생률'이라 함)과 관련해서, 실제 보험사고발생률이 계약 체결 시 예측 수준과 상이하거나 향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보험회사가 예정발생률을 변경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변경할 권리를 의미함
9) 「금융서비스중개업자 등에 관한 내각부령(金融サービス仲介業者等に関する内閣府令)」 제5조
10)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 제28조
11) 「은행법」 제52조의 59, 「보험업법」 제283조
12)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 제23조, 「금융서비스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금융서비스중개업자 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29조

○ 아울러 중개업자로서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의무, 고객정보보호 의무, 고객자산예탁 금지 등의 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됨

- 고객이 요청할 경우 금융서비스중개업무에 관하여 금융서비스중개업자가 받는 수수료[13],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해야 함(법 25조)
- 고객 정보를 적정하게 취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법 26조)
  -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은행, 증권, 보험의 각 분야에서 중개를 횡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자산 상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음
-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 의한 중개 행위가 「매개(媒介)」에 한정되는 사업모형임을 감안하여, 금융서비스중개인이 고객의 자산을 예탁 받는 것을 금지함(법 27조)
- 한편,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규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서비스의 경우 자기계약, 고지의무위반, 부적절한 승환모집 등이 금지됨

〈표 2〉 금융서비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구분	은행	증권	보험
공통	고객정보 제공(법 25조 1항), 고객정보의 적정한 취급(법 26조), 수수료 공개(법 25조 2항), 신의성실의무(법 24조), 명의대여 금지(법 21조)		
개별	(법 29조) 은행법 준용 • 정실대출(情実融資)[1] 금지	(법 31조) 금융상품거래법 준용 •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모집행위 금지 • 손실보전 금지 • 주문동향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 금지	(법 30조) 보험업법 준용 • 자기계약 금지 • 고지의무위반행위 금지 • 부적절한 승환모집 금지

주: 1) 거래처와의 관계에 따라 리스크를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주는 것
자료: 金融庁(2021. 6. 10), "「金融サービス仲介業」創設の背景および概要について"

○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과 취급상품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사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점차 핀테크기업과 금융사업자의 제휴가 촉진되고 상품제조와 판매기능의 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14]

- 2021년 11월 현재 등록된 사업자는 핀테크기업인 '400F'와 금융투자회사인 'SBI 네오모바일 증권' 두 개사임[15]
  - SBI 네오모바일 증권은 고객에게 그룹사의 자전거보험과 애완동물보험을 제공할 계획임
  - 라이프넷생명보험 산하 전업보험대리점인 「라이프넷 Mirai」의 경우 올해 내에 사업자등록을 검토 중임
- 한편, 기존 중개업자는 전문성이나 상품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금융서비스중개업 등록을 통해 기존의 상품라인업을 횡단적으로 넓히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16]
  - 특히, 기존의 특정 업권 중개업자는 프로모션이나 준법감시(Compliance) 등의 업무 관리에 대해 제휴 금융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어, 금융서비스중개업 진입 시 그 노하우를 타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13) 법 25조 2항, 「금융서비스중개업자등에 관한 내각부령」 제34조 1호, 2호
14) 日本経済新聞(2021. 10. 27), "「銀·証·保」の商品、代理店で一体販売へ 下がる垣根; ワンストップ"; 日本経済新聞(2021. 10. 28), "金融代理店、制約多く 予備軍にためらいも"; 日本経済新聞(2021. 11. 1), "ワンストップ代理店、構える大手金融 対抗か共存か"
15) 金融庁(2021), "免許·許可·登録等を受けている業者一覧"(https://www.fsa.go.jp/menkyo/menkyo.html)
16) 澤井 俊之(2021. 5. 21), "金融サービス仲介業への参入の検討ポイントの整理", The Finance